

세미나
지상중계

제3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

곽진숙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7월 15일(금) 오후 1시부터 한양대학교 HIT(한양종합기술연구원) 6층 대회의실에서 <대학교육에서의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3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최근 대학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작권 관련 법 제도의 규제를 받고 있어 대학수업에서 자료의 공유를 저해하는 저작권 정책이 대학교육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포럼은 모든 대학에 공통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저작권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은 대교협 황대준 사무총장의

개회사, 교육과학기술부 한석수 교육정보통계국 국장의 축사, 한양대학교 임덕호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강석원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의 <고등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저작권 정책>, 허재용 과장(교육과학기술부 이러닝과)의 <초·중등교육에서 저작권법 적용 사례>, 김동현 사무국장(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대학수업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보상금 제도 도입>, 안효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학수업에서 저작권법의 적용 가능성>, 이형규 교무처장(한양대학교)의 <대학교육에서의 보상금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체로 보상금 제도를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협회,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측은 “교육의 공익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7월 15일(금) 오후 1시부터 한양대학교 HIT(한양종합기술연구원) 6층 대회의실에서 <대학교육에서의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3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최근 대학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작권 관련 법 제도의 규제를 받고 있어 대학수업에서 자료의 공유를 저해하는 저작권 정책이 대학교육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포럼은 모든 대학에 공통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저작권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은 대교협 황대준 사무총장의 개회사, 교육과학기술부 한석수 교육정보통계국 국장의 축사, 한양대학교 임덕호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강석원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의 <고등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저작권 정책>, 허재용 과장(교육과학기술부 이러닝과)의 <초·중등교육에서 저작권법 적용 사례>, 김동현 사무국장(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대학수업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보상금 제도 도입>, 안효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학수업에서 저작권법의 적용 가능성>, 이형규 교무처장(한양대학교)의 <대학교육에서의 보상금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체로 보상금 제도를 마련한 문화체육

관광부와 한국저작권협회,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측은 “교육의 공익성과 재산권 보호를 조화시키려는 제도”로 보상금 제도를 설명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말했다. 저작권법 관련한 국제 조약의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학에만은 보상금 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4월 28일 고시된 보상금의 규모는 사용량에 비해 최소한의 보상만을 하는 정도로 미미한 규모라는 점, 저작권자의 권리는 꼭 인정되어야 하며, 보상금 제도는 그들의 최대한의 양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4년 이상의 논의 과정을 거쳐 고시된 것으로 법 시행을 앞두고 재논의하지는 것은 무리라는 점, 따라서 법 시행을 앞두고 현실적인 보상액수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책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서는 초·중등교육에서 저작권법 적용에 관한 사례 발표를 통해 초·중등교육에서 교육관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제한 내용과 보상금이 면제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법률전문가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거나 법률적으로 볼 때, 대학수업에서 이용하는 저작물의 구체적 허용 범위에 대한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대학 교무처장은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징수에 대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차별 문제”, “포괄이용방식에 의한 지급보상금 산출의 적정성 문제”, “복사 주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유무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현행 보상금 지급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정토론에서 대학측(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토론자는 대학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영리 목적으로 할 것이냐 공공성을 강조하고 지식의 공유와 전수를 중시할 것이냐 하는 본질적인 질문과 함께 현재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국가적인 이슈 앞에 대학이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보상금이라고 하는 부담까지 대학에 전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기를 되물어야 하며, 서둘러 시행하는 것보다는 정부부처와 대학간의 합의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 신탁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과연 모든 대학에서 발생하는 해외 기관 등과의 저작권 분쟁 문제를 다 해결해줄 수 있는가 의문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대학측(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에서도 저작권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수업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일은 미래의 창의적 저작권자들을 길러내는 일이라는 점,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을 국가가 나서서 저해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저작권자가 함께 win-win하는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학에서 수업을 직접 담당하면서 동시에 저작권자인 교수를 대표한 토론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대학의 수업을 책

입지는 교수들은 보상금 얼마 받겠다는 마음보다 자신이 생산하고 창조한 지식을 후대들과 더 많이 공유하고 나누는 일에 몰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보상금보다는 사회적인 공공의 이익을 더 중시하기 때문임을 언급하며 MIT의 사례도 2000여 강좌를 공개하고 있으나 저작권 문제로 분쟁한 사례는 없었다고 하였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CC(Creative Commo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의 공유와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학들은 전반적으로 대학현장에서 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권 보상금을 초·중등교육과 마찬가지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보상금 기준 고시 등 저작권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포럼은 강의 공개와 강의 자료 공유가 확산되는 세계적 동향 속에서, 대학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타당한지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앞으로 대학의 환경과 현실을 고려하여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살리면서 저작권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다.